

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 []지정
[]지정사항변경 신청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20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기관 또는 단체명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
	소재지 (전화번호 :)	

신청 내역	검정기관의 명칭	
	검정기관의 소재지 (전화번호 :)	
	검정기관의 대표자	생년월일
	검정경비 징수 승인 신청액	항 목 승인신청액

변경사항 (※ 변경신청 시에만 기재)	변 경 전
	변 경 후

「공연법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대예술전문
인 검정기관

([] 지정 [] 지정사항변경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(서 명 또 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

첨 부 서 류	※ 지 정 사 항 변 경 신 청 의 경 우 변 경 되 는 사 항 과 관 련 된 서 류 만 제 출 합 니 다 . 1. 검정기관 운영계획서 1부 2. 검정기관 재정운영계획서 1부 3. 검정시설 및 설비현황 1부 4. 법 제 15 조 제 2 항 에 따 른 검 정 경 비 산 출 내 역 서 1 부	수수료 없 음
---------	--	------------

유의사항

-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, 검정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검정기관은 무대예술전문인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5년간 보존·관리하여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